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9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9.

고 명 욱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협약의 체결,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료방송 제공 여부의 확인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104
----------	----------

발의연월일: 2023. 9. 1.

발 의 자: 고명욱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정순옥 장호섭
남현주 황국주 최홍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확인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 나.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0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3) 「방송법」 제2조
 -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 다. 비용추계: 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 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
3. “고령 중증장애인”이란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 가구”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과 취사·취침 등을 같이 하며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유료방송 이용요금 일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산출내역: 1,380명(65세이상 저소득^{기초·차상위} 고령 장애인) × 6,000원(지원액) × 12월 = 99,360천원

※ 지원대상 실인원의 35%*(483명 정도) 추계시 약 34,776천원

* 유료방송지원 10개 지자체 평균 지원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210	35	35	35	35	35	35

다. 재원조달방안: 재검토 요청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본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직접수혜가 아닌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원함에 따라
- 장애인복지 정책지원의 방향이 자칫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 다변화된 시청권에 대한 보조적인 시혜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대한 고려 필요